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또는 우수실험	수수료
제출서류	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혈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유의사항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